

- 광복절(8·15)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! -

제79회 광복절(8·15)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'24. 8. 15.(목) 00:00에 시행합니다.

○ 감면 대상자

- 시행일(8.15.) 기준, '24. 1. 1.부터 '24. 6. 30.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,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, 정지·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(결격)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○ 조치 및 효과

- △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△ 운전면허 정지·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(운전 가능) △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※ 다만,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행정심판·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·도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.

감면대상 확인
(www.efine.go.kr)

자주하는 질문
(www.efine.go.kr)

○ 특별감면 제외대상

- ① 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·음주무면허·음주사고 등 포함)
- ② 인피뺑소니
- ③ 난폭·보복운전
- ④ 단속경찰관 폭행
- ⑤ 살인·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
- ⑥ 약물운전
- ⑦ 자동차 강·절취
- ⑧ 무면허
- ⑨ 허위·부정면허(대리응시 포함) 취득
- ⑩ 교통 사망사고(1명 이상) 야기
- ⑪ 시행일 기준, 과거 3년 이내 정지·취소·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
- ⑫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
- ⑬ 초과속(제한속도보다 80km/h 이상)
- ⑭ 양육비 미이행

《 특별감면 확인 방법 》

- ① 경찰청 '교통민원24'(www.efine.go.kr)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
-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'경찰민원콜센터'(☎ 182)에서 확인(평일 09:00~18: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)
- ③ 경찰서(교통민원실)를 직접 방문(평일 09:00~18:00)하여 확인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)
- ④ 운전면허 정지·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